###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2359

제안연월일 : 2023년 3월 5일

제 안 자:교육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할당 기준 (60%)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면서 법과 달리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, 이는 동 개정조례안이 법보다 강한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.

따라서 성별비율 기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함.

#### 2. 주요내용

○ 안 제7조제6항의 "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"를 "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"로 수정함.(안 제7조제6 항).

##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6항 중 "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"를 "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⑤ (생 략)	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	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⑤ (개정안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<ul> <li>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</li> <li>이 위촉직 위원 수의 1</li> <li>0분의 6을 초과하지 아</li> </ul>	<ul> <li>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「양성평등법기본법」 제21조제</li> <li>2항에 따라 성별을 고</li> </ul>
	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	<u>려하여 구성하여야 한</u> <u>다.</u>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「양성평등법기본법」 제21조제2 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

#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제7조(위원회의 구성)	① ~ ⑤ (생	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⑤ (현행과
략)		같음)
<u> </u>		⑥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
		는 「양성평등법기본법」 제21조제2
		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
		<u> 여야 한다.</u>